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이상희 · 김정재
김상훈 · 서천호 · 박정하
김성원 · 강대식 · 조지연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·중국·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 또한,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,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,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

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,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취득일 후 3년이”를 “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”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.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	② -----
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	-----
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-----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	-----
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	-----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	-----
다.	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. -----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-----취득일
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	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-----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-----
록대장에 올라 있는 <u>사람</u>	-----
<u><단서 신설></u>	----- <u>사람.</u>
	<u>다만,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</u>
	<u>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</u>
	<u>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</u>
	<u>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</u>
	<u>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</u>